

# 「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민성 의원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21인

### 3. 제안이유
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,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1조)
- 실무추진단,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-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## 5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의2, 제8조, 제19조, 제24조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,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, 계획 수립, 협의회 운영 등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업의 법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, 중앙 부처의 계획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,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간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고, 스마트도시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<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>는 안전 발생 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.